

서울특별시 마포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동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143
----------	--------

발의연월일 : 2024. 11. .

발 의 자 : 강동오, 고병준, 남해석, 이상원,
오욱자, 이한동, 채우진

1. 제정이유

직장 체육의 활성화와 우수 선수의 발굴·육성을 통해 지역 체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이를 위해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여 구민의 체육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구정 홍보 및 체육 인재 발굴·육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나. 경기부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5조)

다. 경기인 채용 및 자격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경기인 보수 및 운영경비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7조)

바. 위원회의 구성, 직무, 회의 소집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8

조~제11조)

사. 경기부 운영 위탁 및 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제14조)

아. 경기부 소속 단원의 인권 보호 및 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자.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3. 관계법령

1)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7조

4. 조 례 안 : 붙임

5.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6.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입법예고: 2024. 11. 8. ~ 11.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기인”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에 두는 경기 종목별 지도자와 선수를 말한다.
2. “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기부에 두는 종목별 감독과 코치를 말한다.
3. “운영경비”란 경기부의 운영 및 경기인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합숙비, 숙소관리비, 장비구입비, 훈련비, 경기출전비, 경기대회 입상포상금, 상해보험가입비, 치료경비 및 그 밖에 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여러 비용 등을 말한다.

제3조(경기부 설치 및 구성)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 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구정 홍보 및 체육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경기부를 둘 수 있다.

② 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및 간사 각 1명과 종목별 경기인으로 구성한다.

③ 단장은 업무 담당 국장, 부단장은 업무 담당 과장,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각각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장: 경기부 대표 및 운영 총괄

2. 부단장: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업무 대행

3. 간사: 선수단 운영의 제반 행정사항과 회계업무 수행

④ 제2항에 따른 경기부의 종목별 선수단의 정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경기인과 계약체결 및 해지) ① 구청장은 경기인을 채용시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경기인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선발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회 등 체육 관련 기관·단체 또는 종목별 감독으로부터 경기인 자격이 있는 자를 복수추천 받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③ 경기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기준에 따른 해당 종목의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

3. 선수는 각 경기단체에 등록된 자

④ 제1항에 따른 계약조건, 계약기간, 재계약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⑤ 구청장은 경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 하거나 고의로 피하는 경우
3. 경기성적이 저조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도모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병역법」에 따른 입영대상자로서 입영에 따른 통지서가 나온 경우
6. 경기부를 해체하거나 예산이 감소된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경우

⑥ 경기인은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5조(경기인 보수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인에게 연봉, 수당, 기타 보수 등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봉 및 수당, 기타 보수 등의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수당 종류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경기부 운영 및 경기인 채용 등에 관하여 심의·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운동경기부인사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기부의 설치 및 해체
2. 경기부의 연간 계획
3. 경기부의 종목, 경기인 편성, 경기인 연봉·보상액 책정, 우수경기인 선발 등
4. 경기인의 징계의결 및 계약해지 등 경기인의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
5. 모범경기인 선발·표창
6. 그 밖에 경기부 및 경기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구청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당연직 위원: 경기부 단장 및 부단장
2. 위촉직 위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경기부 운용 또는 체육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명, 지도자 및 선수대표 중 1명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위원회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다.

제13조(운영·관리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경기부의 운영·관리를 체육 관련 법인이나 기관·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기부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사무에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

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관리규정 등) ① 구청장은 경기부의 조직, 인사, 복무, 보수, 복리후생, 회계, 물품관리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마련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인권보호 조치 등) ① 단장은 경기부 소속의 선수 및 지도자 등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폭력·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
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
4.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
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

② 단장은 경기부 소속 선수 및 지도자, 선수관리 담당자 등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경기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경기인 보수 등)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기간: 2026. 1.~2029. 12.(60월)

※ 2025년 신규창단 자치구 직장운동경기부 시예산 미편성으로 2025년 시보조금 지원 불가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이후 계속)	합계
세입	시 보조금	547,000	547,000	구예산 확보에 따른 차등보조 최소64,100~ 최대382,900	구예산 확보에 따른 차등보조 최소64,100~ 최대382,900	구예산 확보에 따른 차등보조 최소64,100~ 최대382,900	최소1,586,300 최대 2,242,700
	구비	-	-	예산정책과 논의필요 최소64,100~ 최대382,900	예산정책과 논의필요 최소64,100~ 최대382,900	예산정책과 논의필요 최소64,100~ 최대382,900	최소 492,300 최대 1,148,700
	소계(a)	547,000	547,000	547,000	547,000	547,000	2,735,000
세출	인건비	370,000	370,000	370,000	370,000	370,000	1,850,000
	훈련비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장비구입비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071,250
	기타운영비	97,000	97,000	97,000	97,000	97,000	528,750
	소계(b)	547,000	547,000	547,000	547,000	547,000	2,735,000
□ 총 비용(a-b)		0	0	0	0	0	0

4. 재원조달 방안: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창단~창단2년차까지 운영비 전액 지원, 창단 3년차 이상팀규모, 자치구 재정력에 따라 차등보조 창단 3년차 이상부터는 구 예산정책과와 협의를 통해 책정

○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재정력	40~50%미만	50~70%미만	70~100%미만	100%이상
보조율	70% 이내	60% 이내	50% 이내	필요시 30% 이내

5. 덧붙이는 의견

가. 비용추계의 세출은 차후 사업내역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관광경제국 체육진흥과 최영민
연락처	02-3153-9864

【관 계 법 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490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직장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지도·육성을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2. 2. 17.>

④「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 3. 18., 2012. 2. 17.>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장 체육에 관한 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도·감독한다. <개정 2020. 12. 8.>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4768호, 2024. 7. 30., 일부개정]

제7조(직장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①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체육지도자(체육동호인에게 생활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체육지도자로 한정한다)를 두어야 하는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명 이상인 국가기관과 공공단체로 한다. <개정 2014. 7. 7.>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운동경기부의 선수에게 전문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체육지도자로 한정한다)를 두어야 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명 이상인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공공단체로 한다. <개정 2014. 7. 7.>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이 지역을 달리하여 사무실이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체육지도자 및 운동경기부를 1개 이상의 사무실이나 사업장에 배치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7. 7., 2020. 8. 5.>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지도자의 배치 및 운동경기부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7. 7.>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자체수입보다 지원금, 찬조금 및 기부금 등 외부지원에 의존하여 운영되는 법인

2.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공단체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기관
3. 그 밖에 경영 악화로 인한 인원 감축 등 직장 여건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
-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직장의 장은 운동경기부와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직장체육대회와 직장대항 경기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둔 공공기관 및 직장의 장은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운동경기부와 체육동호인조직이 폐지·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 <개정 2014. 7. 7.>